

④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

(하나증권)

[서비스 주요내용]

해외증권사가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개설하고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손쉽게 국내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7항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에만 외국인통합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해외리테일 고객의 국내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기 계열회사 요건 등을 미충족한 해외증권사도 주식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비거주 외국인은 별도의 계좌개설 없이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한 현지 증권사를 통해 통합 주문·결제를 할 수 있어 이들의 투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주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투자 주체가 다양화되며 신규 자금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17년 통합계좌 도입 이후 보고의무 완화 등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개설 사례가 없었으나, 통합계좌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부가조건]

신청기업은 해외 증권사의 내부통제 감시 의무를 부여받아, 해외 증권사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도록 하고, 국내 증권사에 요구되는 수준의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의 적정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금감원은 외국 증권사가 최종투자자 거래내역을 사후보고하는 양식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하며, 신청인은 금융당국의 요청 시 거래내역을 즉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해외 증권사와의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